

**2023년 제5차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
식품위해평가과 공무원근로자(전문연구원 다급) 채용공고**

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근무할 ‘전문연구원 다급’을
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.

2023년 5월 19일
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

1.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

☐ 채용 개요

○ 채용인원 : 1명

전형	분 야(과제명)	부 서	직종 및 등급	인 원
일반전형	용량-반응평가를 통한 인체노출안전기준 설정 연구(카드뮴 등 10종)	식품위해평가부 식품위해평가과	전문연구원 다급	1명

○ 담당업무

- ① 용량-반응평가를 통한 인체노출안전기준 설정 연구(1명)
- 인체노출안전기준 설정을 위한 국내외 독성 자료 수집 및 분석
 - 국제기관들의 식품위해평가 기법조사를 위한 문헌조사
 - 인체노출안전기준 검토 대상 성분 자료 수집분석
 - 연구결과 보고서 작성
 - 정보수집을 위한 국제회의 등 준비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업무 등

□ 자격 요건

구분		채용 인원	근무 지역	자격요건
분야	등급			
① 용량-반 응 평 가 를 통한 인체 노 출 안 전 기준 설정 연구	전문 연구원 다급	1명	충북 오송 (평가원)	○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취득자 ○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·연구 실적이 있는 자 ○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채용예정분야의 경력·연구 실적이 있는 자 ○ 7년 이상 채용예정분야 경력·연구 실적이 있는 자 [관련분야] ○ 식품영양학, 식품공학, 화학, 보건학, 약학, 의학, 독성학, 생명공학, 생물(공)학, 분자생물학 및 식품 등 관련 분야 ※ 국제기관 정보수집·소통을 위한 영어능통자 우대

○ 공통사항

-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
- 해외여행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
- 남자의 경우,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
-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

○ 우대사항

- 장애인, 저소득층 대상자, 국가유공자
- 영어소통능력자

2. 보수 및 근무조건

□ 근무 조건 등

- 신 분: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기간제근로자
- 근무기관: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과
(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)
* 「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」 제24조(전보)에 따라 향후 근무지 및 소속부서가 변동 될 수 있음
- 근무기간
 - 일반전형 : 채용계약일부터 ~ '23년 12월 31일까지
 - * 근무성적평가 등에 따른 재계약 가능(계속근로기간 2년 경과 시 무기계약직 전환)
- 근무시간: 주 40시간
- 보수수준: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름
(전문연구원(다급) 1호봉 기준, 월 2,206,300원)
* 급식비(매월 14만원), 초과근무수당, 명절 상여금(6개월 이상 근무시) 별도 지급
**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, 국민연금 가입

3. 구비서류 및 전형일정

○ 제출서류

구분	내용
공통 서류 (필수제출)	-응시원서(시스템 입력) -자기소개서(시스템 입력) -주민등록초본(남자만, 병역사항 기재된 것) -최종학력증명서(졸업증명서, 성적증명서)
선택 서류 (해당자 제출)	-어학성적서 -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※국민연금가입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미인정 -기타 면허(자격)증 사본 -연구목록 및 장애인 증명서 등 기타 증빙서류(운전면허 제외)

○ 서류제출 시 주의사항

- 자기소개서 작성 시 학교명, 출생지, 부모 직업 등 개인 신상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
- 학력, 경력, 자격증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제출 서류에 본인 여부, 발행기관, 발급번호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인정되지 않음
- 학력증명서, 자격증 등은 원본확인 문서번호를 통해 진위확인이 가능한 서류로 제출
 - ※ 문서확인기간이 지난 서류 제출시 문서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해당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
-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, 휴직기간, 직위(직급) 및 담당업무(구체적으로 기재), 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가 명시된 것으로 제출
 - ※ 서류 미제출 및 미비한 경우나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, 서류 전형시 해당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

- 파일 오류 및 비밀번호 설정으로 열람이 불가하여 심사가 어려운 것은 본인 책임으로 함
- 응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(면접) 예정일('23. 6. 1.) 기준으로 인정하여 심사
- ※ 최종(면접)시험일까지 해당 요건 충족 여부를 증명하지 못하면 부적격 처리됨

○ 면접심사 주의사항

- 별도로 안내한 입실시간까지 면접대기장에 입실하지 않는 경우 지각으로 인한 불합격 처리
-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확진자 및 발열(37.5도 이상)·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 등)이 있는 경우 면접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
- * 면접대기장 입실 전 발열체크 실시 예정

○ 전형일정

- 접수기간 : '23. 5. 19.(금) 9:00 ~ '23. 5. 29(월) 23:00
- 접수방법 : 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(<http://employ.mfds.go.kr>)에 접속하여 접수(인터넷 접수만 가능)
- 시험방법 및 일정

시험방법	시험(예정)일자	시험장소	합격자 발표 / 장소
서류전형	'23. 5. 31.(수) 예정	-	개별 통보
면접시험	'23. 6. 1.(목) 예정	별도 통보	개별 통보
최종발표	'23. 6. 2.(금) 예정	-	개별통보 및 채용 홈페이지 게시
근무시작일	'23. 6월중 예정	-	변동 가능

* 채용심사 운영상 시험 날짜가 변경될 수도 있음

4. 기타사항

- 채용분야 및 자격요건, 근무기관(지역) 등이 본인과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, 제출된 서류는 아래 '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' 제11조에 따라 처리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)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.
-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-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.
-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. 다만,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- 합격 통보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거나, 채용포기 의사가 있는 경우, 신원조회 · 조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응시자는 해당 응시부서 및 지원등급, 연락받을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응시원서 기재 착오 또는 누락, 연락불능, 제출서류 미비,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
- 채용포기, 합격취소, 결격사유, 개인사정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채용되지 못하여 결원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.

(※ 문의 : 평가원 식품위해평가과 이영주 ☎043-719-4512)

5.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

○ 제출 서류

구분	내용
제출서류 목록	- 기본증명서 1부 - 가족관계증명서 1부 - 주민등록등본·초본 1부(남녀 공통 제출) * 다만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까지 기재된 것 - 최종학력증명서 1부 - 통장사본 1부 - 신원진술서(약식) 1부 - 반명함판 사진 2매 - 흰색비탕 사진파일 제출(JPG, 해상도 300이상, 354픽셀* 472픽셀) -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(해당자에 한함) - 저소득층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(해당자에 한함)